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

▣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 집합규약 변경 전·후 비교표

- 다 음 -

항목	변경전	변경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3 항	<신설>	9. 클래스 S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신설 2014.02.28.)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1 항	<신설>	9. 클래스 S 수익증권 (신설 2014.02.28)
제 39 조(보수)3 항	<신설>	(클래스 S)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5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5 (신설 2014.02.28)
제 40 조(판매수수료)4 항,5 항 및 6 항	<신설>	④판매회사는 S 클래스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 3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02.28) ⑤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100 분의 0.15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p>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공급 금액으로 한다.</p> <p>1. (클래스 S) 후취판매수수료: 3년미만 환매시 환매 금액의 0.15%이내 (신설 2014.02.28)</p> <p>⑥제 5 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 4 항 1 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02.28)</p>
제 41 조(환매수수료)1 항	<p>1. 클래스 A , 클래스 C1,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5, 클래스 C-I 및 클래스 I 수익증권</p> <p>가.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p>	<p>1. 클래스 A , 클래스 C1,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5, 클래스 C-I, 클래스 I 및 클래스 S 수익증권 (개정 2014.02.28)</p> <p>가.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p>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1 항	<p>법 개정사항 반영</p> <p>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p> <p>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p> <p>3.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p>	<p>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p> <p>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p> <p>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개정 2014.02.28)</p>